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851호, **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5회계연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9,259백만원에서 14,710백만원으로 5,451백만원 증가함에 따라,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액을 5,451백만원 증액하여야 함

나. 그러나, 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('25.2.27)로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등 정책사업비를 3,303백만원에서 3,345백만원 증액, 예치금을 4,923백만원에서 4,881백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음(20% 미만 변경)

다. 이에,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액을 당초 4,923백만원에서 10,332백만원으로 5,409백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함(20% 초과 변경)

[수입계획 변경내용]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	18,231	23,682	5,451	29.9
세외수입		1,614	1,614	-	-
경상적세외수입		432	432	-	-
	이자수입	432	432	-	-
임시적세외수입		33	33	-	-
	보조금반환수입	33	33	-	-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		1,149	1,149	-	-
	과징금	1,149	1,149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	16,617	22,068	5,451	32.8
보전수입등		14,866	20,317	5,451	36.7
	융자금원금수입	5,607	5,607	-	-
	예치금회수	9,259	14,710	5,451	58.9
내부거래		1,751	1,751	-	-
	예탁금및예수금	1,751	1,751	-	-

[지출계획 변경내용]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(정책사업명)	당초 (A)	1차 변경	2차 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18,231	18,231	23,682	5,451	29.9
식품안전 위생관리	3,303	3,345	3,345	42	1.3
위생관리시설개선 용자사업	1,500	1,500	1,500	-	-
교육·홍보사업	451	451	451	-	-
식중독 예방사업	185	185	185	-	-
음식문화개선사업	249	269	269	20	8.0
식품안전관리사업	565	565	565	-	-
조사 연구 평가 사업	353	375	375	22	6.2
행정운영경비	5	5	5	-	-
기금관리비	5	5	5	-	-
재무활동	14,923	14,881	20,332	5,409	36.2
내부거래지출	10,000	10,000	10,000	-	-
보전지출	4,923	4,881	10,332	5,409	109.9
여유자금 예치	4,923	4,881	10,332	5,409	109.9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「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¹⁾

- 서울특별시는 지난 1989년,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, 시민의 영양수준을 향상하고자 **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**을 운영하고 있음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가 54억 5,1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식품진흥기금)**에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재원중 54억 900만원을 증액하고, 다른 정책사업인 **식품안전 위생관리**에도 4,2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계획에 반영하고, 이와 연동된 지출계획에도 여유자금 예치와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재원을 지출계획한 것으로
 -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은 당초 지출계획(149억 2,300만원)보다 36.2%, 54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나,
 - 또 다른 정책사업인 **식품안전 위생관리**는 음식문화개선사업(2,000만원 증액)과 조사 연구 평가사업(2,200만원 증액)에 4,200만원을 증액하여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지출계획하려는 것은 당초 지출계획(33억 300만원)보다 1.3%, 4,200만원 증액되는 것이기에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, 다른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에 일부 증액하여 지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운용중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·지 균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,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동 기금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
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(소비자 단체의 교육·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)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·활동지원
3.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4.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
5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
6.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
7. 집단급식소(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급식시설 개수·보수를 위한 용자사업
8. 그 밖에 식품위생, 시민영양,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
9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